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 운영지침 존속기한이 2026.9.25. 도래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고시 개정 필요

2. 개정내용

존속기한 연장(2026.9.25. → 2029.9.25.)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글로벌성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
파이낸스센터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전자우편 : moka402@korea.kr
- 팩스 : 044-204-7504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전화 044-204-75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